

대전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나1131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하영, 박응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발

담당변호사 강병열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11.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가단22641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487,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C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장려금, 보너스 수당 등을 받을 청구권 내지 계약상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2014. 11. 17.자 주사업자 명의변경 계약을 171,411,3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411,3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C이 D로부터 장려금, 보너스 수당 등을 받을 청구권 내지 계약상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2015. 4. 15.자 채권양도 또는 채권포기를 171,411,3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411,3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C이 D로부터 장려금, 보너스 수당 등을 받을 청구권 내지 계약상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2014. 11. 17.자 주사업자 명의변경 계약을 135,924,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924,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C이 D로부터 장려금, 보너스 수당 등을 받을 청구권 내지 계약상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2015. 4. 15.자 채권양도 또는 채권포기를 135,924,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924,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과 관련 민사사건 경과 등

- 1) 원고는 2011. 10. 28.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이 원금과 2014. 11. 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C과 그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222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2) 원고는 2015. 6. 10. 위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고, 2015. 8.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 2017나114892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5. 항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3)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582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5. 11. 27.에 5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9. 4. 24. C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5,473,31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8카합20721)을 받았다.
- 4)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9. 9. 25. 기준 총 171,411,383원(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액, 신청비용 합계액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수령액을 공제한 금액)에 이른다.

나. 피고와 C의 다단계판매원 활동

- 1) C은 2011. 9. 15.부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D에서 회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며 장려금, 보너스 수당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받아왔다. 피고가 2012. 2. 23. D에 회원등록을 하면서 그때부터 피고와 C은 부부회원(부부 공동사업자) 판매원으로

활동해 왔다.

2) D 영업지침에 따르면 부부회원(부부 공동사업자)은 동일한 회원번호만 부여받고 공동으로 사업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D는 부부회원 중 ‘주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수당 등을 지급하며 다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데, C은 위와 같이 2012. 2. 23.부터 피고와 함께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면서 ‘주사업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D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4. 11. 17. ‘주사업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4. 11. 17.부터 부부회원 중 ‘주사업자’로 지정받아 D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아래와 같이 C이 D를 탈퇴할 때까지 피고가 주사업자로서 D로부터 지급받은 받은 수당 등(2014. 11월분부터 2015. 5월분까지) 합계액은 70,974,606원에 이른다(갑 제4호증의 2 기재 참조).

3) 한편 C은 2015. 4. 15. D를 탈퇴하였고, 그 후 피고가 부부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여 D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2014. 11.경 적극재산이 72,300,000원 상당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이 518,000,000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2014. 11. 17. D 공동 다단계판매원의 주사업자 명의를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변경한 것은 C의 D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받을 청구권 내지

계약상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에게 사해의사도 있었으므로, C의 2014. 11. 17.자 주사업자 명의변경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위 사해행위 무렵인 2014.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D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은 합계 558,427,957원인데 그 중 적어도 1/2 이상이 C의 지분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71,411,383원의 한도 내에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원고가 C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4. 11. 17.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C와 피고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공동 다단계판매원의 주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1,411,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와 C 및 D 사이의 법률관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2012. 2. 23. D의 공동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후 독립된 사업자로서 D의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고 다른 사람을 D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추천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D의 보상플랜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일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하였던 사실, 부부가 D의 공동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개의 동일한 회원번호만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간에 별도의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피고와 C은 한 개의 회원번호(E)만을 사용하면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2 직급으로 활동해온 사실, D는 부부 공동사업의 경우 수당 등을 주사업자에게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와 C이 부부 공동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2012. 2. 23.부터 피고와 C에 대한 수당 등을 주사업자인 C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 오다가 주사업자가 피고로

변경된 2014. 11. 17.부터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은 상호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D에 피고와 C이 공동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과 관련된 수당 등 채권도 피고와 C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의 공동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피고와 C의 위 공동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활동을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사업과 관련된 피고와 C의 D에 대한 수당 등 채권은 조합 채권으로서 피고와 C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C의 2014. 11. 17.자 주사업자 변경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부 공동사업자의 경우 누가 주사업자로 등록되는가에 따라 D에 대한 관계에서의 법률상 지위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수당 등이 주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하여 그 채권이 주사업자 개인의 단독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C이 2014. 11. 17. 주사업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D에 대한 수당 등의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불가분채권의 성질상 D는 변경된 주사업자인 피고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면 C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결국 수당 등을 주사업자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합의된 조합 채무 이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C이 피고로 공동 다단계판매원의 주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D에 대한 관계에서 수당 등 지급채무의 이행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C의 주사업자로서의 사업권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을 청구권 내지 계약상 지위가 피고에게 양도 내지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공동 다단계판매원 주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C의 2014. 11. 17.자 주사업자 변경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가)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1. 10. 28.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4. 11. 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7. C과 피고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점, ② C과 피고는 2012. 2. 23. D의 공동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당시 최초 주사업자 명의를 C으로 지정한 후 2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를 변경하지 않다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관련 민사소송 제기한 2014. 11. 17. 주사업자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한 점[회원정보 변경신청서(을 제2호증)의 ‘변경 후 주사업자 서명란’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③ C과 피고가 위와 같이 주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무렵인 2014. 11.경 C의 적극재산은 72,30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은 518,000,000원 상당으로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각했던 점, ④ C과 피고는 당시 부부였던 점, ⑤ 위와 같이 주사업자 명의를 변경되더라도 C의 채권자로서는 C의 조합지분이나 확정된 이익배당 청구권 등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으나 조합 내부의 관계나 공동 다단계판매원과 회사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채권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주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채권의 만족을 실현함에 있어 상당한 현실적인 장애가 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4. 11. 17. 주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와 C의 관계 및 이 사건 공동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D가 조합이 지정한 주사업자의 계좌로 수당 등을 입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곧바로 조합원들 사이의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에서 주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 C이 D에서 탈퇴한 무렵까지 피고에게 지급된 수당 등 중 C 지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와 C 사이에 지분비율에 관하여 달리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수당 등에 관한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 C이 D에서 탈퇴한 무렵까지 피고가 받은 수당 등 합계액은 70,974,606원(2014. 11.분부터 2015. 5.분까지)이므로, 그 중 C의 지분비율로 추정되는 50%에 해당하는 35,487,303원(= 70,974,606원 × 50%)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위 35,487,303원은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채권액 101,416,666원(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4. 11. 17.까지 17일 동안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16,666원¹⁾의 합계액)의 범위 내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7.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5,487,3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C이 2015. 4. 15. D를 탈퇴한 행위도 원고에 대하여 C과 피고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가 C의 D 탈퇴 이후 받은 수당 등을 포함하여 2014. 11.부터 2018. 11까지 받은 수당 등 합계액 558,427,957원 전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손해로 보아야 하고, 위 손해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71,411,383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1,411,383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D 탈퇴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의 영업지침에 의하면 회원 탈퇴는 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D를 탈퇴하면 그 시점부터 우대회원 자격 및 혜택을 상실하고 D의 보상플랜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 등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바, D를 탈퇴함으로써 C에게는 수당 등을 받을 권리가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C의 D 탈퇴 이후 지급받은 수당 등이 피고와 C의 공동 판매 활동에 따른 수당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D 영업지침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지급되는 장려금과 보너스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노력에 따른 매출 신장의 보상이며,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조직매출에 따라 D로부터 장려금과 보너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C이 기존 이그제큐티브 디렉터2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5가지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직급 유지와 수당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C 본인의 계속적이고도 상당한 노력과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C의 탈퇴 이전의 활동만으로 그 탈퇴 후에도 D로부터 장래에 지급받을 수당 등이 일률적·고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C의 탈퇴 이전의 활동을 이 사건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장래 지급받을 수당 등 채권액으로 확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이 사건 탈퇴행위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C의 2015. 4. 15.자 D 탈퇴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C와 피고는 공모하여 2015. 4. 15. C이 D 탈퇴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C의 이 사건 탈퇴행위의 내용과 그 결과 및 앞서 위 제3-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이 사건 탈퇴행위가 채무자인 C의 책임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사건 탈퇴행위가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2015. 4. 15.자 D 탈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김윤중, 판사 윤현정

1) 1,416,666원 = 100,000,000원 × 2.5% × 17/30일, 원 미만 버림